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별법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8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이광희 · 박지원 · 김문수
송재봉 · 강득구 · 양부남
윤종오 · 조계원 · 허종식
박정현 · 문금주 · 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조작 사건부터 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

국가 범죄는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효 제도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단죄가 무력화되는 사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 도과를 이유로 배척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배제하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면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에도 전면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무한 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무한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생명·신체 침해 및 실종 범죄: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258조의 죄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에 대한 고문 및 강제실종 범죄,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범죄: 「형법」 제124조, 제125조의 죄

다. 조작 및 은폐 범죄: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 제152조, 제155조 및 제227조의 죄

라. 민주화운동 탄압 등 인권침해 범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주화운동 또는 헌정질서 수호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범죄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부수적 범죄

마. 지휘책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를 교사, 방조하거나 지휘관 또는 감독자로서 이를 알면서도 방치·용인한 행위

2.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내란 및 반란 범죄: 「형법」 제87조부터 제93조까지의 죄 및 「군형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나. 헌정 파괴 부수 범죄: 가목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자행된 일체의 모의·실행·방조 행위로서 「형법」 제114조 및 제136호 등에 해당하는 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발생한 일체의 관련 위법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 ①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항변할 수 없으며,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제5조(민사상 입증책임의 완화)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해 사실 및 공권력 개입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의 시효 및 배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령은 제4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특별사면 등의 절차적 제한) 대통령은 제2조의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 및 감형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서면에 의한 동의
2.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 범죄로 인하여 국가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의 완전

한 배상 또는 회수

제8조(형사처분 등과 손해배상의 관계) 제2조의 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피해자는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법원은 국가의 은폐·부실 수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영구적 진상규명 의무) 국가는 제2조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적 확정판결의 존부와 관계없이 숨겨진 공범과 실체를 규명할 영구적인 의무를 지며 추가 사실 확인 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발생하여 이미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범죄 및 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면 적용한다. 이는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법적 안정성보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단죄와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공익적 가치가 압도적으로 우월함에 근거한다.